

자격갱신 관련 안내글

안녕하세요.

(사)한국예술치료학회입니다.

자격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년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만료 년도 10월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바로 다음 날부터 자격증은 자동 정지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자격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자격관리유지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안내가 학회원의 개인연락처로 안내되며, 한국예술치료학회의 홈페이지 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안내(갱신 안내, 자격정지 안내 등)를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연락처가 변경되면 로그인 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연락처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회원의 불미스런 상황은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책임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갱신 신청에 필요한 자격 유지 조건 안내

제 15조 (자격의 유지)

예술심리상담사(1,2급), 예술심리상담사(전문가), 예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연회비 납부

2. 자격유효기간 내에 본 학회 주관 학술시간 최소 100시간 이상 참가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시간 100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본 학회 주최 본부 학술대회 및 연수회 4회 필수 참가

2) 본 학회 소속 지부 학술대회 2회 이상 필참. (본 학회에서 학술활동 시간으로 승인된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 (이 조항은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8년 1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3) 본 학회 주최 윤리교육 필수 이수(1, 2급 3시간이상,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4시간이상)

3. (각 영역별)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와 예술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취득자는 아래①②③④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①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투고

② 관련 저서 또는 역서

③ (본 학회 학술대회장에서)공개사례발표

④ 본 학회 전문가 심화연수 필수 이수(연1회 8시간 필참) (이 조항은 2019년 3월 변경되어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9년 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수련감독전문가와 전문가 자격취득자에게 해당(15조3항)하는 선택 조건이므로, 학술시간 100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속 지부 학술 2회 이상 필참 조건 관련 안내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과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소속 지부, 학술 시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속 지부가 없는 경우 본부로 문의하여 소속 지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정 응시 자격으로 본부 학술 필참 4회 + 지부 필참 2회 = 총 6회 필참하셔야 합니다.

(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 1,2급은 학술 필참 2회 + 지부 필참 2회 = 총 4회 필참)

☑ 소속 지부는 규정상 변경 불가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을 희망 할 경우 본부로 사유서 제출하여 심의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유서 양식 : 자료실 참고)

■ 자격의 정지 및 회복 안내

※ 자격의 정지 및 회복에 따른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취득 후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슈퍼비전 및 수련활동 시간)은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및 갱신을 위한 수련과정 및 수련활동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회비 미납 시,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의 슈퍼비전, 수련활동,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지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4. **자격 정지 후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 및 정지·해지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
5. **(자격정지 회복) 자격정지 후부터는 갱신 차수 별로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씩 누적되어 적용된 시간으로 이수해야 한다.**
6. [특별조항] 자격 정지 후 평생 1회에 한해서는 4항과 5항의 조건 없이 갱신 1차수(5년)의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준다. (자격규정 4장 제16조 4,5항은 2017년 전반기 개정안 발효, 2017년 후반기 시행, 2018년 전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자격증 갱신 신청방법**

자격증 갱신 신청방법은 전자메일 접수로 매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 신청의 미승인 사유**

갱신 신청 후 최대 2개월내에 미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갱신 신청은 취소되며, 갱신요건을 충족한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연회비 미납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갱신심사는 미승인 처리되며,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갱신심사가 진행됩니다.

- **자동정지 및 회복**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자격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자격증은 자동 정지됩니다. 자동정지 이후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을 이수한 후, 정지·해지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후, 한국예술치료학회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격내부규정 제16조제6항 [특별조항]**

자격 정지 후 평생 1회에 한해서는 4항과 5항의 조건 없이 갱신 1차수(5년)의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